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용차량 운영관리 지침 일부 개정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27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73호

### 공용차량 운영관리 지침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용차량 운영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재단 공용차량 기준 정수 조항 신설
2. 공용차량 기관명 로고 의무적 표시 규정 신설 및 수기 운행일지 작성 조항 삭제
3. 별표 1.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용차량 보유현황 삭제  
→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·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 운행 기준 신설
4. 별표 2. 재단 차량의 기준정수 신설
5. 별지 1. 차량 운행일지 삭제  
→ 차량 정수 배정 신청서 신설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내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